

의안번호	2207577
의 퇴 인	민형배 의원
회 답 일	2025.3.10.
추계번호	25C03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의2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등)	(제1항) 국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제2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의2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학교별 또는 학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학급당 학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공립 학교를 신설하거나 학급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¹⁾²⁾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 방향과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기준은 학교급별 또는 학교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³⁾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동 법 시행령 제52조⁴⁾에 근거한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학교급별·학년도별 편성기준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제주교육청 등 가장 많은 교육청의 과밀학급 기준은 학급당 28명임⁵⁾
- 별도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보유한 교육청으로는 대전교육청(초등 23명, 중등 25명, 고등 23명)과 세종교육청(초등 1~2학년 20명, 3~6학년 25명, 중·고등 25명) 및 강원교육청(초등 23~24명, 중등 28명, 고등 22~28명)이 있으나, 별도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청별로 ‘학생배치기준’이 있어 학교급별·학년도별 편성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1] 시·도교육청별 학생배치기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감은 현행 ‘학생배치기준’이 아닌 별도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이 곤란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급 중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경기도 5만 713개, 서울특별시 2만 3,395개 등 전국에 총 16만 3,511개가 있음

* [참고자료2] 2024년 학생 수별 학급 수 현황(시도별·학교급별)

- 다만, 현시점에서 과밀학급 기준이나 학생배치기준 이외에 지역별로 설정될 별도의 적정 학생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워 합리적 가정이 곤란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증액 교부금이 교부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수도 있음

2) 이와는 별개로 학생수 과소학급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통폐합 등이 고려되고 학생 및 교원 재배치, 원거리 통학 등에 대한 지원, 폐교 관리 등에 대한 재정소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과밀학급 발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과밀학급의 경우를 전제함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대전, 경북교육청은 28명 초과이며, 이외 강원교육청은 초등 23~24명·중등 28명·고등 22~28명, 경남교육청은 초등 1학년 23명·초등 2~6학년 26명·중등 시(동,읍) 28명·시(면)·군 25명·고등 28명, 전남의 경우 학급당 적정학생수 초과 3명인 기준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교육감이 실시할 구체적인 시책 및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준을 초과한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②기존 학교 내 학급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 ③기존 특별교실 등을 전환하여 일반학급을 확충하는 방안, ④학생 분산 배치를 위해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원거리 통학생을 중심으로 통학버스·교통비 등 통학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중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학교용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비용, 학급을 추가 편성하거나 특별교실을 전환하는 경우 시설비 및 내부비품비,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통학 지원을 위한 교통수단(통학버스) 구입 또는 임차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추계 대상과 소요액이 상이함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향을 바탕으로 사업량(학교 수, 학급 수, 통학 지원 대상 학생 수 등)과 단가(학교 신설, 학급 확충, 통학 지원 단가 등)를 적절히 가정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지역별로 설정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및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구체적 예측이 곤란하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

[참고자료1] 과밀학급 및 적정 학생 수 기준(시도교육청별)

시도	과밀학급 기준	적정 학생 수
서울	학급당 28명 이상	○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 학생배치기준 - 초 25명, 중 26명, 고 26명
부산	학급당 28명 이상	○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 학생배치기준 - 초(25명), 중(27명), 고(일반고 23명/특성화 21명)
대구	학급당 28명 이상	○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 초, 중: 27명 이하 - 고: 25.2명 이하(추첨배정고 기준)
인천	학급당 28명 이상	○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 학급편성 기준 - 초 27명 - 중 28명, 고 28명 1.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 - 일반학교(27명), 결대로자람학교(25명), 소규모학교(20명) - 다문화밀집학교(20명), 교육균형발전학교(25명)_1,2학년 대상 2.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 - 신입생 배치지표: 28명 (단, 결대로자람학교: 25명, 다문화밀집교: 20명) 3. 고등학교 학급편성 기준 - 일반고: 28명(단, 결대로자람학교: 25명)
광주	학급당 28명 이상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	○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 2024년 학생배치기준 - 초 1~2학년 20.4명, 초 3~6학년 24.7명 - 중 25명, 고 26명
대전	학급당 28명 초과	초 23명, 중 25명, 고 23명
울산	학급당 28명 이상	○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 2024년 학생배치기준으로 작성 - 초 1학년 20명, 초 2~6학년 27명, - 중 27명, 고 24명
세종	학급당 28명 이상	- 초 1~2학년 20명, 3~6학년 25명 / 중·고 25명 ※ '24년~'25년 교원 정원 감소로 인해 중등의 경우 급당 27명~28명 배치
경기	학급당 28명 이상	○ 적정 학생 수 별도기준 없음 ※ 2024년 학생배치기준으로 작성 - 초 26~30명 - 중 27~36명 - 일반고 25~35명, 특성화고 22~27명

시도	과밀학급 기준	적정 학생 수																								
강원	초 23~24명 중 28명 고(일) 22~28명, (특) 16~24명	초 23~24명 중 28명 고 (일) 22~28명, (특) 16~24명																								
충북	학급당 28명 이상	○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 ※ 2024.10. 배치계획에 의거 학급당 학생수를 아래와 같이 운영 - (초) 동지역 26명, 읍·면지역 25명 - (중) 동지역 28명, 읍·면이하 25명 - (고) 일반고 20~29명, 특성화고 16~20명																								
충남	초·중·고 28명 이상 (교육부 기준 준용: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2021.7.)	○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 ※ 학급편성 배치지표(2024년) <table><tr><th rowspan="2">급별</th><th colspan="4">일반학급 (단위: 명)</th></tr><tr><th>신입생</th><th>동지역</th><th>읍지역</th><th>면지역</th></tr><tr><td>초</td><td>22</td><td>28</td><td>27</td><td>26</td></tr><tr><td>중</td><td>-</td><td>28</td><td>28</td><td>28</td></tr><tr><td>고</td><td colspan="4">· 일반고: 20명~34명 · 특성화고, 특목고 등: 16~28명 (계열에 따라 적정규모 정원으로 별도 추진)</td></tr></table>	급별	일반학급 (단위: 명)				신입생	동지역	읍지역	면지역	초	22	28	27	26	중	-	28	28	28	고	· 일반고: 20명~34명 · 특성화고, 특목고 등: 16~28명 (계열에 따라 적정규모 정원으로 별도 추진)			
급별	일반학급 (단위: 명)																									
	신입생	동지역	읍지역	면지역																						
초	22	28	27	26																						
중	-	28	28	28																						
고	· 일반고: 20명~34명 · 특성화고, 특목고 등: 16~28명 (계열에 따라 적정규모 정원으로 별도 추진)																									
전북	학급당 28명 이상	○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 ※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 (초) 20~27명(단, 일부 개발지구 28명) - (중) 27, 25, 24명(동, 읍, 면 기준) - (고) 20~27명(일반고 기준)																								
전남	학급당 적정학생수+3명 초과	○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 ※ 현재 학급편성 기준 - 초등학교 ·시지역 28명(1~5학년 25명) ·읍지역 27명(1~3학년 20명, 4~5학년 25명) ·면지역 24명(1~5학년 20명) - 중학교: 시지역(29명), 읍·면지역(28명) - 고등학교: 일반고(18명~28명), 특목고(18명~30명), 특성화고(18명~22명)																								
경북	학급당 28명 초과	○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 ※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 초(1학년): 동 27명, 읍·면 24명 - 초(2~6학년): 동 28명, 읍·면 24명 - 중: 동 26명, 읍·면 24명 - 고: 21~25명(일반고, 특성화고)																								

시도	과밀학급 기준	적정 학생 수																																									
경남	초: 1학년 23명, 초 2~6학년 26명 중: 시(동, 읍)-28명 / 시(면), 군-25명 고: 경남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 28명 초과를 과밀학급으로 파악함	○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 ※ 2024학년도 학생배치 기준 - 초: 1학년 23명, 초 2~6학년 26명 - 중: 시(동, 읍)-28명 / 시(면), 군-25명 - 고: 2024년 고등학교 학생 배치기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1학년</th><th colspan="2">2학년</th><th colspan="2">3학년</th></tr><tr><th>시</th><th>군</th><th>시</th><th>군</th><th>시</th><th>군</th></tr><tr><td>일반고</td><td>22~31</td><td>22~25</td><td>23~33</td><td>22~26</td><td>22~33</td><td>22~23</td></tr><tr><td>특성화고</td><td>20</td><td>20</td><td>20</td><td>20</td><td>20</td><td>20</td></tr></table>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시	군	시	군	시	군	일반고	22~31	22~25	23~33	22~26	22~33	22~23	특성화고	20	20	20	20	20	20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시	군	시	군	시	군																																					
일반고	22~31	22~25	23~33	22~26	22~33	22~23																																					
특성화고	20	20	20	20	20	20																																					
제주	학급당 28명 이상	○ 적정 학생수 기준 없음 ※ 학생 수 변동 추이, 교원정원, 시설여건 등을 검토하여 학급당 배치기준 결정 <2024학년도 학생배치기준> - 초등학교 <table><tr><th>동(洞) 지역</th><th>읍면 (원도십학교)</th><th>제주형자율학교</th><th>비고</th></tr><tr><td>29</td><td>27</td><td>27</td><td>1~2학년 27명</td></tr></table> - 중학교 <table><tr><th colspan="2">동(洞)지역</th><th rowspan="2">읍면지역</th><th rowspan="2">제주형자율학교</th></tr><tr><th>제주시 서부</th><th>그외</th></tr><tr><td>30</td><td>29</td><td>26</td><td>25(제주시동 27)</td></tr></table> - 고등학교 <table><tr><th colspan="4">일반고</th><th colspan="3">특성화고</th></tr><tr><th rowspan="2">평준화</th><th colspan="2">비평준화고</th><th rowspan="2">표선고 (IB)</th><th rowspan="2">동(洞)</th><th rowspan="2">읍면</th><th rowspan="2">한국뷰티고 서귀산과고</th></tr><tr><th>동(洞)</th><th>읍면</th></tr><tr><td>30</td><td>28</td><td>28</td><td>25</td><td>25</td><td>24</td><td>23</td></tr></table>	동(洞) 지역	읍면 (원도십학교)	제주형자율학교	비고	29	27	27	1~2학년 27명	동(洞)지역		읍면지역	제주형자율학교	제주시 서부	그외	30	29	26	25(제주시동 27)	일반고				특성화고			평준화	비평준화고		표선고 (IB)	동(洞)	읍면	한국뷰티고 서귀산과고	동(洞)	읍면	30	28	28	25	25	24	23
동(洞) 지역	읍면 (원도십학교)	제주형자율학교	비고																																								
29	27	27	1~2학년 27명																																								
동(洞)지역		읍면지역	제주형자율학교																																								
제주시 서부	그외																																										
30	29	26	25(제주시동 27)																																								
일반고				특성화고																																							
평준화	비평준화고		표선고 (IB)	동(洞)	읍면	한국뷰티고 서귀산과고																																					
	동(洞)	읍면																																									
30	28	28	25	25	24	23																																					

자료: 2024년 10월 기준 시·도교육청 자료를 교육부 취합 제출

[참고자료2] 2024년 학생 수별 학급 수 현황(시도별·학교급별)

구분	20명 이하				20명 초과				학급 수 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합계
서울	7,223	1,383	2,431	11,037	10,212	6,850	6,333	23,395	17,435	8,233	8,764	34,432
부산	2,292	344	1,595	4,231	4,707	2,753	1,795	9,255	6,999	3,097	3,390	13,486
대구	1,585	256	736	2,577	3,783	2,215	1,897	7,895	5,368	2,471	2,633	10,472
인천	2,327	536	968	3,831	4,773	2,517	2,248	9,538	7,100	3,053	3,216	13,369
광주	1,939	200	333	2,472	2,007	1,598	1,427	5,032	3,946	1,798	1,760	7,504
대전	1,924	290	782	2,996	1,749	1,332	1,048	4,129	3,673	1,622	1,830	7,125
울산	1,021	119	306	1,446	1,963	1,188	1,019	4,170	2,984	1,307	1,325	5,616
세종	775	61	106	942	844	598	479	1,921	1,619	659	585	2,863
경기	7,608	1,210	2,028	10,846	25,727	12,898	12,088	50,713	33,335	14,108	14,116	61,559
강원	2,579	372	646	3,597	1,560	1,259	1,067	3,886	4,139	1,631	1,713	7,483
충북	1,867	361	513	2,741	2,412	1,486	1,236	5,134	4,279	1,847	1,749	7,875
충남	3,019	521	818	4,358	3,251	1,971	1,646	6,868	6,270	2,492	2,464	11,226
전북	3,226	492	932	4,650	1,856	1,672	1,324	4,852	5,082	2,164	2,256	9,502
전남	3,176	673	1,071	4,920	2,099	1,497	1,223	4,819	5,275	2,170	2,294	9,739
경북	2,750	744	1,112	4,606	3,643	2,227	2,009	7,879	6,393	2,971	3,121	12,485
경남	3,547	709	1,107	5,363	5,464	3,200	2,789	11,453	9,011	3,909	3,896	16,816
제주	654	105	90	849	1,234	694	644	2,572	1,888	799	734	3,421
전국 합계	47,512	8,376	15,574	71,462	77,284	45,955	40,272	163,511	124,796	54,331	55,846	234,973

주: 1) 2024년 4월 기준

2) 특수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제외

3) 복식학급의 경우 인가받은 학년으로 하되, 인가학년이 없는 경우 최고 학년으로 분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